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채납자등의 사용자에게 채납관련 정보요구권 부여〉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971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체납자 등의 사용자에게 체납관련 정보요구권 부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성훈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6. 2. 24.
3. 회부연월일 : 2026. 2.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금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사업주 등 사용자가 요구한 경우에도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체납자 등의 사용자에게 체납관련 정보요구권 부여

개정안은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¹⁾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제1호에 따른 <u>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u>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하 “심판청구등”이라 한다)이 계속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제9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① ----- ----- ----- ----- ----- ----- <u>종합신용</u> <u>정보집중기관</u>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u>부담하는 사용자 및</u> ----- ----- ----- ----- ----- -----.

현 행	개 정 안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② ③ (생략)	②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지방세 징수·공익 목적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1년 경과 체납액 500만원 이상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관련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체납자 등의 사용자에게도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 관련 정보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사용자에게 정보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을 완화하고, 지방세 징수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현재 지방정부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체납자에 대한 급여 정보를 받아 지방세 체납자의 회사를 상대로 급여를 압류할 수

1) 체납액에 대해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행정적으로 징수 절차를 보류(결손처분)하는 조치

있는 수단²⁾이 있으므로, 사용자에게까지 체납정보 요구권을 부여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용자가 피용자의 체납 또는 정리보류의 관련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사용자가 피용자인 체납자에게 해고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등 체납자는 법 개정안이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체납자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면 지방세 체납 징수는 더욱더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특정 개인인 사용자에게 체납 또는 정리보류의 자료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나 낙인효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임.

추가로, 「국세징수법」에 대해서도 동일 내용으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므로, 「국세징수법 일부법률개정안」³⁾의 논의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216977, 2026. 2.24

문 의 처

02)6788-5333
